## 정부3.0 브랜드과제별 추진 계획

# 27-2. 고용변동신고 일원화

- 여러가지 신고, 한번에 팍팍! -

2014. 7.



## <mark>27-2</mark> 고용변동신고 일원화

과제 분류		<b>주관 기관</b> (관련 기관)	법무부 체류관리과 (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)
과제담당자	김태형 사무관	담당자 전화번호	02-2110-4059

## 가. 현황 및 문제점

#### □ 현황

- o 고용주가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의무 부담
  - \*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외고법) 제17조
- o 종래 법무부에서 일원적으로 외국인을 관리하였으나, '04년 고용허가제\*가 도입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부의 중복 관리 발생
  - \*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(E-9 비자)를 송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, 다른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

### □ 문제점

- o 고용주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
  - \* 출입국관리법(법무부)상 동일한 내용이 있음에도 '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시고용관리라는 명목하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의무부과
- 착오로 어느 한쪽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,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로 인해 민원 발생 (법무부 200만원, 고용부 500만원)
- \* 고용주가 법무부나 고용부 중 한쪽에 신고하면 다른 한 곳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

## 나. 추진 내용

- ◈ (정책 목표) 이중신고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
- ◈ (주요 고객) 비전문취업(E-9)과 방문취업(H-2) 자격 소지자를 고용한 고용주

구 분	추진 전	추진 후
신고사항	• 양 부처 신고사항 일부 상이	• 신고사항 일치
신고방법	• 출입국사무소, 고용센터 2회 방문	• 출입국사무소, 고용센터 중 1곳 방문
	• 온라인(www.hikorea.go.kr.)	• 온라인 신고절차 대폭 간소화
위반시	위반시 • 신고누락 시 누락된 부서에서 처벌	• 누락 시 처벌 없어짐
제재조치 • 양 부처 모두 누락 시 이중		• 양 부처 모두 누락 시 발견부처 처벌
	• 양 구서 모구 구락 시 이중서월	(해당내용 법률안 심의 중)
기타	• 취업개시신고 논의중단	• 취업개시신고 일원화 추진
		• 근무처변경허가제도 개선 추진

#### □ 고용변동신고(방문, 팩스) 일원화

- o 고용주가 법무부와 고용부를 모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느 한 부처에만 신고해도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게 일원화 추진
  - \* 온라인 신고는 '11.10월 이미 일원화 완료되어 방문·팩스 신고에 대하여 추진
- 고용주의 신고사항을 양 부처가 동일하게 하고, 접수한 부처가 이를 전산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송부하면 상대부처에서 신고한 것으로 처리
- ㅇ 고용주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 선(先) 시행
- 법무부의 경우 신고서가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이 불가피하나 신속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원화 선 시행('14.6.30.)

## □ 온라인 신고절차 개선

- o 고용주의 방문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온라인 신고 일원화 실시
  - \* 그간 고용주 불편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양 부처가 2년 반의 논의 끝에 `11.10월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로 온라인신고 일원화 합의

- 양 부처의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 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사용실적 저조
- \* '13년말 현재 법무부 접수 14.5만 건 중 온라인 신고 1만여 건에 불과
- o 온라인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하이코리아 개편작업 완료('14.6.30.)
  - \* 개편 내용은 첨부된 '하이코리아 개선 전후 비교' 참조

#### ─ < 정부3.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한 추가과제 발굴 > ─

#### o 취업개시신고 일원화 추진

- 외국인 채용단계에서도 양 부처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정책대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 (출입국관리법 제35조, 외고법 제12조)
- \* 신고의무의 주체(법무부 : 외국인, 고용부 : 고용주)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 일원화가 추진되다가 중단
- 채용단계에 있어서 이중신고도 해고 등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원화하기로 합의

#### ㅇ 근무처변경허가제도 개선 추진

-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다시 법무부로부터 근무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
- \* 고용주가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았으니 법무부에는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허가를 누락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이중관리로 인한 문제 심각

#### o 외국인근로자 성명표기방식 개선 추진

- 양 부처의 성명표기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고용부에 성명표기방식 일치 제안
- \* 법무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규정에 따라 외국인성명을 표기하나, 고용부는 송출국 현지의 송출기관에서 입력한 성명 사용하여 개선 요구

#### 다. 추진경과 및 일정

#### □ 고용변동신고 일원화

- o '04. 8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복신고 문제 발생
- o '11.10월 법무부 하이코리아로 온라인 신고 일원화 실시
- o '14. 5월 연계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시행
- o '14. 6월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시행
- o '14년 하반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
#### □ 추가과제 (취업개시신고, 근무처변경허가, 외국인근로자 성명표기)

- o '14. 7월 법무부·고용부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
- o '14.12월 전산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 운영 (합의 시)
- o '15. 1월 제도 개선 내용 시행 (합의 시)

#### < 연도별 이행계획 >

	'14년	'15년	'16년	'17년
주요 이행 계획	-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- 외국인근로자 성명표기 방식 개선	- 취 업 개 시 신 고 일원화 실시 - 근무처변경제도 개선	- 서비스 보완 및 개선	- 서비스 보완 및 개선
소요 예산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## 라. 기대 효과 및 정부3.0 가치

### □ 기대 효과

- o '13년 기준으로 13.5만 건의 이중신고 불편 해소
  - \* 전체 고용변동신고 14.5만 건 중 방문 2만 건. 팩스 11.5만 건 개선
-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계산 시 총 57.5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

#### □ 정부 3.0 가치

- o 소통과 협력으로 부처 중심주의 극복
- 외국인행정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(영국, 캐나다 등) 이민업무 담당인 법무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'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중관리 발생
- \*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체류 관리의 책임을 지는 법무부와 갈등 발생 ('13년말 현재 불법체류율 20.7%)
- '14.3.20.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계기로 부처중심이 아닌 국민의 시각 에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자는 공감대 형성
- \* 수원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이 VIP에게 외국인 고용절차가 번잡함을 호소
- o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정책개선 추진
- 종래 일원화 논의가 양 부처간 서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, 국민 입장에서는 서식일치 보다는 신고회수 감소가 중요
- 예) 서식을 몇 칸으로 할 것인지, 어느 칸에 어느 사유를 담을 것인지 논의
- \* 신고내용 일치로 논의방향을 선회하여 답보상태이던 논의의 돌파구 마련
- 법무부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나 시행규칙 개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선 시행 후 시행규칙 개정키로 결정
- \* '14.6.30.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시행, '14년 하반기 중 시행규칙 개정 예정

## 마. 홍보 계획

- o '14. 7월 고용주에게 문자로 일원화 실시 홍보
- o '14. 7월 신고 일원화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
- o '14. 8월 공단 등 정책수요자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변경사항 홍보
- o '14.11월 하이코리아 개편 관련 동영상 제작·배포 예정
- o '14년 연중, 신고 위해 방문한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이 직접 홍보

## 참고

# 아이코리아 개선 전후 비교

개선 전	개선 후	비고
하이코리아 접속	하이코리아 접속	
로그인(회원가입)	로그인(회원가입)	회원가입 시,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,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입력 (대리인 입력화면 추가)
↓ 전자민원 신청 배너 클릭 ↓	$\downarrow$	
고용변동신고 클릭	고용변동신고 클릭	별도의 고용변동 신고 배너 신설
↓ 관련법령 등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	→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	회원가입 시, 대리인을 지정했을 경우 대리인이 가능
산고버튼 클릭	↓ 신고대상외국인 및 외국인별 신고내용 입력란 표출	회원가입 시 작성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소속 전체외국인을 법무부 자료만으로 표출
↓ 신청하기 버튼 클릭 ·		관련법령 등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체크 화면 동시 표출
↓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입력 □	$\downarrow$	
공인인증서 인증		
↓ 신고사항 입력	신고사항 입력	
증빙서류 첨부	증빙서류 첨부	
↓ 고용부와 법무부 자료 일치 여부 확인		법무부 전산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일치여부 확인 불필요
나 대상외국인 불러오기	<b>↓</b>	
↓ 제출하기 버튼 클릭 ↓	제출하기 버튼 클릭	
고용부와 법무부 전송	고용부와 법무부 전송	외국인 등록번호와 고용보험사업장관리 번호,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전송 ※ 미일치자는 각 기관에 별도 표시하여 전소 행정처분 등 조치